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2 선고 2015나3900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및 구상금 청구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

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

A

변론 종결 2016. 3. 22.

판결 선고 2016. 4. 22.

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3. 선고 2013가단519118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피고는 원고에게 55,586,410원 및 그 중 26,217,180원에 대하여는 2013. 8. 31.부터,18,334,000원에 대하여는 2012. 9. 27.부터 각 2014. 1. 8.까지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1,035,230원에 대하여는 2014. 12. 23.부터,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9. 6.부터 각 2015. 10. 19.까지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

1.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

주문 제1항과 같다(원고는 제1심에서 44,551,180원과 그중 26,217,180원에 대하여는 2013. 8. 31.부터, 18,334,000원에 대하여는 2012. 9. 27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, 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(제1의 다항 부분)를 '다.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3. 6. 30.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26,217,180원, 2013. 8. 7.부터 2014.12. 22.까지 피고의 추가 치료비로 1,035,230원, 2012. 9. 26.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8,334,000원의 각 보험금(이하 '이 사건 보험금'이라 한다)을 지급하였다.'로 고친다.

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및 제15행의 '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진행 중이다(수원지방법원 2014노5475)'을 '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. 11. 20. 항소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(대법원 2015도19762)'로 고친다.

③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'5호증'을 '11호증'으로 고친다.

④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(제2의 나항 부분)를 '나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

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합계 55,586,410원(=26,217,180원 + 1,035,230원 + 28,334,000원)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'로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합계 55,586,41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26,217,18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. 8. 31.부터,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8,334,0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. 9. 27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. 8. 1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,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1,035,23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. 12. 23.부터,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나머지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. 9. 6.부터 각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인 2015. 10. 1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부동식, 판사 이혜림